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1
----------	-----

제출년월일 : 1998.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 안 이 유

- 1차산업기구인 산업과, 축산과와 농촌지도소의 기능이 일부 중복되어 영농지원 체계의 혼선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 산업과와 축산과의 통합계획과 연계하여 현행 산업과 소관업무중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의 일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기 위함.

□ 주 요 골 자

- 산업과와 중복관리하고 있는 다음의 사무에 대해 농촌지도소에서 전담
가. 식량작물증산 및 지도업무
나. 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리업무
다. 병충해 방제업무
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
마. 귀농정책 추진
바. 농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사. 채소, 특작,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호 내지 제8호를 제9호 내지 제15호로 하고 동조 제2호 내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식량작물증산 및 지도업무
3. 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리업무
4. 병충해 방제업무
5.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
6. 귀농정책 추진
7. 농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8. 채소, 특작,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생 략)	제3조(업무)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u>식량작물증산 및 지도업무</u>
(신 설)	3. <u>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리업무</u>
(신 설)	4. <u>병충해 방제업무</u>
(신 설)	5.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추진
(신 설)	6. 귀농정책 추진
(신 설)	7. 농업 발전기금 융자사업
(신 설)	8. 채소, 특작,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2~8 (생 략)	9~15. (현행 제2호 내지 제8호와 같음)